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공  보

제881호 2014년 8월 25일(월)

공 고

○ 속초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회 란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 등 관계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 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5일

속 초 시 장

1. 제 명 : 속초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지원대상이 「속초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조례」 지원대상과 같으나, 다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포함되지 않았고, 이를 통합·운영함에 있어 대상자 선정기준 적용에 문제점 발생
- 따라서 「속초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조례」는 폐지하고, 현행대로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별도 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저소득주민”란 수급자가 아닌 자로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이 조례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함
- “국민건강보험료”란 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함

나. 지원대상 (안 제3조 제1항, 제2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시 지역가입자로 각 호 해당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중 보험료가 15,000원 이하인 세대, 다른 법률에 지원받는 자 제외

- 보험료 부과기준일에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험료 지원대상에 대한 선정기준 및 지원 한도액, 지원방법, 지원시기, 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매년 공고함

다. 대상자 결정 (안 제4조)

-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지사로부터 매월 지원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아 적정여부를 결정한다.

라. 지원범위 (안 제5조)

-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9월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217-030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 주민생활지원실

(전화 : 033-639-2355, FAX : 033-639-2380)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주민생활지원실(☎ 033-639-2355)로 문의

속초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저소득주민”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규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이 조례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2.“국민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서 정한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제2항에서 정한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시 지역가입자로서 주민등록 세대당 부과금액 기준 월 15,000원 이하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 받는 자는 제외한다.

1. 보험료 부과기준일에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② 제1항의 보험료 지원대상에 대한 선정기준 및 지원 한도액, 지원방법, 지원시기, 지급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매년 공고한다.

제4조(대상자 결정) 시장은 매월 지원대상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지사로부터 통보받아 보험료지원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한다.

제5조(지원범위)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속초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폐지 되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확보된 일반회계 예산은 이 조례의 재원으로 승계한다.